

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도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충청북도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,
-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명예도지사의 위촉·해촉 절차 마련(안 제3조)
 - － 실·국·단·본부장 또는 시장·군수의 추천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
 - － 명예도지사가 사망, 질병, 타 시·도 전출,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 가능
 - － 명예도지사를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회 통보

- 명예도지사의 임기 설정(안 제4조)
 -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, 단,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 해촉
- 명예도지사의 직무 범위 명시(안 제5조)
 -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,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
 - 기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연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(안 제6조)
-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(안 제7조)
 - 도민이 아닌 경우 ‘명예도민’ 권리 부여
 - 도정활동 시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 가능
- 명예도지사의 재정적 지원(안 제8조)
 - 명예도지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비보상 등 지원 가능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은 도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충청북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,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 내용을 보면

안 제3조에서 명예도지사의 위촉·해촉 절차를 마련하고, 안 제4조에서 명예도지사의 임기를 2년, 1회 연임가능으로 설정하고, 안 제5조에서 명예도지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하고, 안 제6조에서 연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7조에서 명예도지사가 도민이 아닌 경우 명예도민의 권리를 부여하고, 도정활동 시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며, 안 제8조에서는 명예도지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비보상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.

이번 제정조례안은 도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충청북도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,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, 실비보상에 있어 대부분의 조례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, 본 조례는 별도의 규정을 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